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562815	
등록번호	110111-5628156	
상 호	주식회사 매드업 (Madup Inc.)	. .
본 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9, 드림빌딩 201호(봉천동)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0, 501호(방배동, 석교빌딩)	2016.04.08 변경 2016.04.12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8층(역삼동, 서림빌딩)	2016.11.15 변경 2016.11.15 등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12층 1202호(서초동, 플래티넘타워)	2018.11.07 변경 2018.11.16 등기

공고방법	<del>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yunkyu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에 게재한다.</del>	. .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에 게재한다.	2015.12.07 변경 2015.12.21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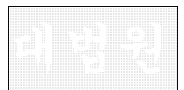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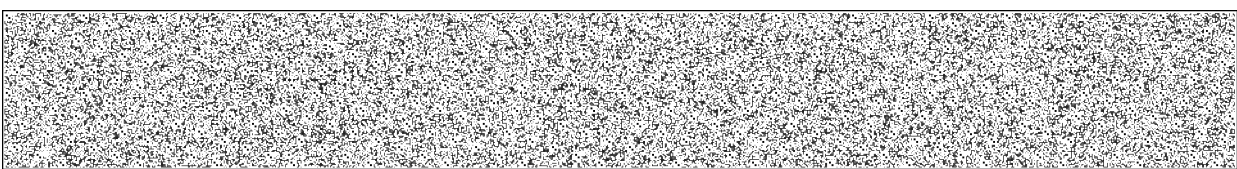
1주의 금액	금 100 원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 주	.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del>보통주식</del>	<del>100,000 주</del>	<del>금 10,0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03,093 주	2015.12.08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03,093 주</del>	<del>2015.12.21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104,482 주	2016.06.11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04,482 주</del>	<del>2016.06.15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105,756 주	2016.08.17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05,756 주</del>	<del>2016.08.17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112,033 주	2016.09.14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12,033 주</del>	<del>2016.09.29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112,369 주	2016.10.08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12,369 주</del>	<del>2016.10.13 등기</del>
발행주식의 총수	118,254 주	2016.11.25 변경
<del>보통주식</del>	<del>112,369 주</del>	<del>2016.11.25 등기</del>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160306041111020021100022005211802167531K1D1SOL1W1 1 발행일:2020/01/02      발급확인번호 8153-AATW-VCVG



등기번호	562815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금 11,825,4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07,254 주		2016.12.27 변경
<del>보통주식 101,369 주</del>		2016.12.28 등기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금 10,725,4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05,643 주		2017.07.11 변경
<del>보통주식 99,758 주</del>		2017.08.11 등기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금 10,564,3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99,330 주		2018.05.03 변경
<del>보통주식 93,445 주</del>		2018.05.03 등기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금 9,933,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98,056 주		2018.07.12 변경
<del>보통주식 92,171 주</del>		2018.07.12 등기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금 9,805,6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33,028 주		2018.07.17 변경
<del>보통주식 92,171 주</del>		2018.07.18 등기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상환전환우선주식비 34,972 주</del>	<del>금 13,302,8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37,225 주		2018.07.18 변경
<del>보통주식 92,171 주</del>		2018.07.18 등기
<del>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del>		
<del>상환전환우선주식비 39,169 주</del>	<del>금 13,722,5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136,476 주		2018.11.30 변경
보통주식 91,422 주		2018.11.30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5,885 주		
우선주식 39,169 주	금 13,647,6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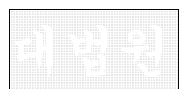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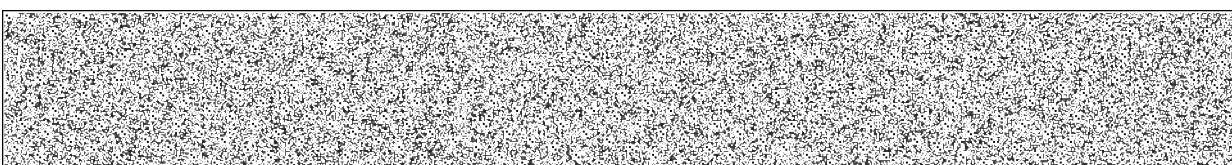
목적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 광고 대행업			
<del>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del>	<2016.12.15 삭제	2016.12.29	등기>
1. 위 각 호에 대한 무역 및 수출입업	<2016.12.15 추가	2016.12.29	등기>
1. 위 각 호에 대한 도매 및 소매업	<2016.12.15 추가	2016.12.29	등기>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6.12.15 변경	2016.12.29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del>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3동 311호(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del>	
<del>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20길 38(봉천동)</del>	
2015년 03월 03일 주소변경	2015년 03월 16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3길 23, 501호(방배동)</del>	
2016년 03월 02일 주소변경	2016년 03월 15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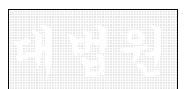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8153-AATW-VCVG

1160306041111020021100022005211802167531K1D1SOL1W1 1 발행일:2020/01/02

- 2/11 -



등기번호	562815
2016년 10월 14일 공동대표규정폐지 및 퇴임	2016년 10월 28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이동호 870906-*****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9, 드림빌딩 305호(봉천동)</del>	
2016년 10월 14일 공동대표규정폐지 및 사임	2016년 10월 28일 등기
<del>사내이사 이주민 840215-*****</del>	
<del>사내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3길 23, 501호(방배동)</del>	
2016년 10월 14일 주소기입	2016년 10월 28일 등기
<del>사내이사 이주민 840215-*****</del>	
2016년 12월 15일 주소삭제	2016년 12월 29일 등기
2018년 01월 29일 퇴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del>사내이사 이동호 870906-*****</del>	
2016년 10월 14일 사임	2016년 10월 28일 등기
<del>사내이사 구하나 850115-*****</del>	
2016년 08월 02일 사임	2016년 08월 17일 등기
<del>사내이사 윤신구 811103-*****</del>	
2016년 08월 17일 사임	2016년 09월 29일 등기
<del>감사 김현수 730902-*****</del>	
2018년 03월 30일 퇴임	2018년 04월 18일 등기
<del>사외이사 손호준 840626-*****</del>	
2016년 12월 15일 취임	2016년 12월 29일 등기
2018년 08월 22일 사임	2018년 09월 03일 등기
<del>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3길 23, 501호(방배동)</del>	
2016년 12월 15일 취임	2016년 12월 29일 등기
<del>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9, 9동 203호(용호동, 롯데아파트)</del>	
2017년 05월 22일 주소변경	2017년 05월 29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9, 9동 203호(용호동, 롯데아파트)</del>	
2018년 09월 14일 공동대표규정설정	2018년 09월 18일 등기
2018년 01월 29일 퇴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감사 박상철 861005-*****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1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손호준 840626-*****	
2018년 08월 22일 취임	2018년 09월 03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윤준식 730319-*****	
2018년 08월 22일 취임	2018년 09월 03일 등기
사내이사 이동호 870906-*****	
2018년 09월 14일 취임	2018년 09월 18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이동호 870906-*****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9, 305호(봉천동, 드림빌딩)</del>	
2018년 09월 14일 공동대표규정 설정, 취임	2018년 09월 18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이동호 87090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11, 413호(서초동, 서초동삼성쉐르빌2)	
2018년 11월 05일 주소변경	2019년 09월 20일 등기



등기번호	562815
사내이사 이주민 840215-***** 2018년 10월 26일 취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9, 9동 203호(용호동, 롯데아파트)</del>	
2018년 11월 05일 취임      2018년 11월 16일 등기	
<del>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 215동 2502호(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del>	
2019년 05월 01일 주소변경      2019년 05월 02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이주민 840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 215동 2502호(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019년 05월 01일 경정      2019년 05월 27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I. 의결권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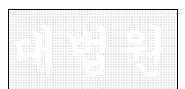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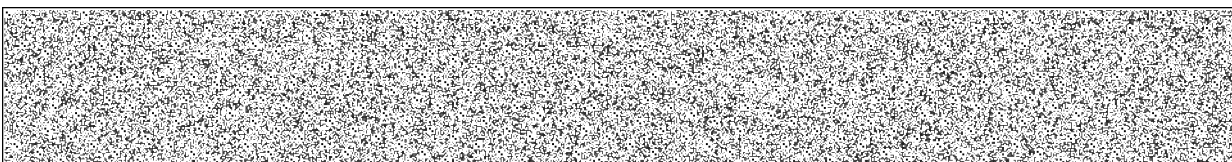
- ① 본건 우선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가 제4장 제2관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II.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발행가액 기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의 주주들에 비해 우선 배당 받는다. 발행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우선주 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 ④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III.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 주주는 발행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제11조 제2항의 주당 주식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3%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등기번호	562815
------	--------

②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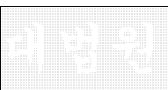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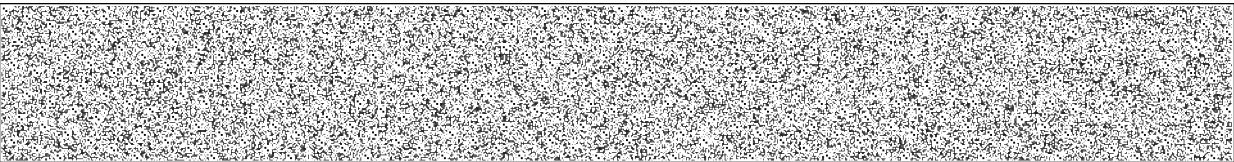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 발행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발행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발행회사의 전체 영업의 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발행회사가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매각되고, 이로 인해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회사의 주주가 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소멸회사가 되고, 위 합병 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발행회사의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존속회사(신설합병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합병 신주(존속회사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존속회사의 자기주식)가 존속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IV.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 주식인수대금 납입일 기준 익일부터 본건 우선주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본건 우선주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본건 우선주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단,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이익배당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이나 이익배당이 완료되는 날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8조에 의해 전환조건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환조건의 조정
  - ①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환조건의 조정은 본조 제2항 내지 4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 ②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11조에 정한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이하 "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된다.  

$$\text{보통주 1주} \times [\text{당초 발행가액} / \text{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새로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격이나 주식관련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이전에 수회에 걸쳐 당초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저 발행가격이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
  - ③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에는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당초 발행가액 / 본 조 제2항에 의해 조정된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수)과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항에서의 기업공개는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 또는 투자자가 인정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코넥스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④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번호	562815
------	--------

당해 병합,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조건을 조정한다. 본조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①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V.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일반상환권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자금을 투자자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을 청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 주식인수대금 납입일 기준 익일부터 3년이 된 날로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일반상환권의 소멸

제21조에서 정한 상환기간(제20조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 이하 본조에서 같음)이 도과할 경우, 발행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의무는 소멸한다. 단, 이 경우 본건 우선주는 상환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4. 상환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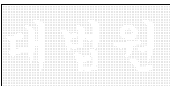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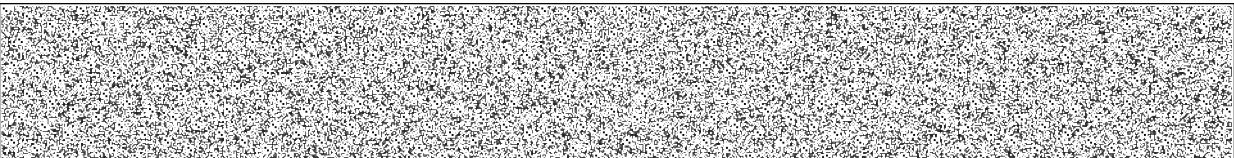
본건 우선주의 주당 상환금액은 본건 우선주의 주당 주식인수대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한다.

5. 상환의무

①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우선주(본건 우선주 및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보다 먼저



등기번호	562815
------	--------

발행한 모든 우선주를 포함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7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VI.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②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와 본 계약을 준용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년 11월 25일 설정      2016년 11월 25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비

1. 배당 및 의결권 등

가. 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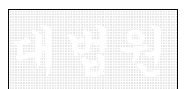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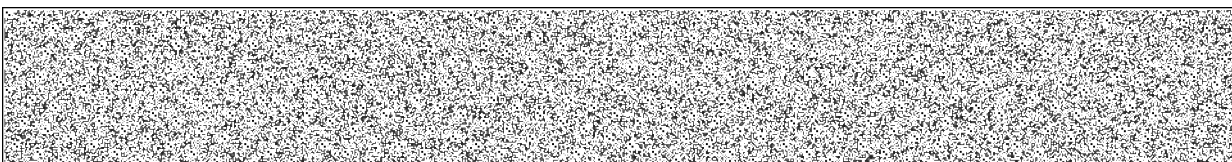
- (1) 상환전환우선주식B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최초 발행가 기준 매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발행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3) 우선주 배당과 관련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본다.
- (4)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위 (1), (2)에 정한 바에 따르며,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B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를 배당 받는다.

나. 잔여재산분배

- (1)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발행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B 1주당 (i) 1주당 주식인수대금 및 (ii) 1주당 주식인수대금에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일까지 연복리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또한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상환전환우선주식B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다. 의결권

- (1) 상환전환우선주식B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2) 상환전환우선주식B가 아래 2.에서 정한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등기번호	562815
------	--------

(3)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B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라.신주인수권

(1)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2)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2.전 환

가.전환권

(1)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를 가진다.

(2)전환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식B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아래 나.에 의해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전환비율의 조정

(1)전환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식B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B 인수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전환비율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보통주의 수로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비율 = 보통주 1주 × [1주당 최초 발행가 /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새로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격이나 주식관련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전환청구 이전에 수회에 걸쳐 최초 발행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최저 발행가격이나 전환가격 또는 인수가격)]

(2)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상환전환우선주식B가 전부 보통주로 인수되었다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본조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일은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로 한다.

(3)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경우 공모가격의 70%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을 공모가격의 70%로 조정한다.

(4)이해관계인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등을 할 경우 1주당 매매가격의 70%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을 매매가격의 70%로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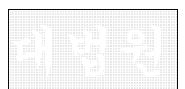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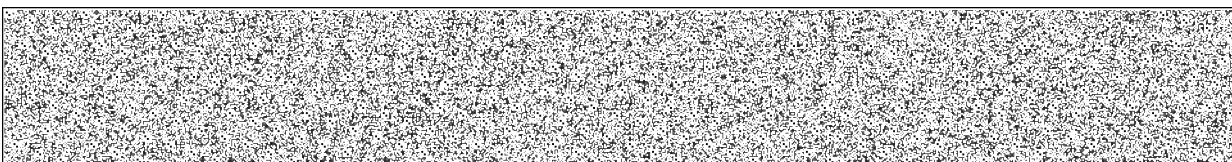
(5)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면, 위 (1) 내지 (4)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6)본 나.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7)발행회사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B 인수계약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i) 최초 전환가격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1주당 발행가를 최초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ii) 전환비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조정된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한다.

다.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1)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





등기번호	562815
------	--------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3.상 환

가.일반상환권

(1)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발행회사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B 인수계약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B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발행회사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이 청구된 우선주 중 상환할 주식을 정하여야 한다.

(2)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가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을 청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상환기간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는 상환전환우선주식B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환전환우선주식B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해관계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풋옵션(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행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상환가액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1주당 상환가액은 (i) 1주당 주식인수대금 및 동 금원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원의 합계액에서 (ii)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가 상환전환우선주식B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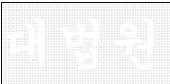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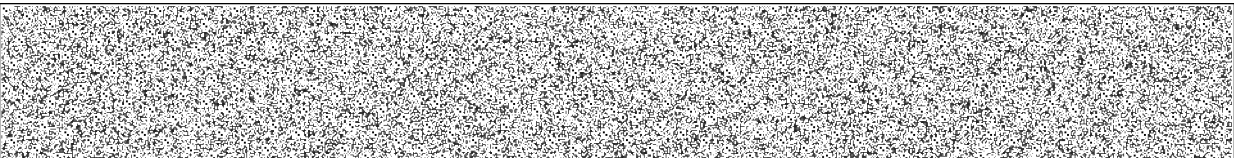
라.상환의무

발행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식B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에 의한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주주에게 해당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식B를 포함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한 모든 우선주를 포함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7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마.계약위반에 의한 상환권

투자자는 (i) 발행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B 인수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ii) 상환전환우선주식B 이외의 상환(전환)우선주(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발행일 및 그 이후 발행될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함)의 인수계약 상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여 상환청구권이 행사되거나 (iii) 발행회사의 채무 또는 부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 또는 부채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iv) 상환전환우선주식B 인수계약상 풋옵션 행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식



등기번호	562815
------	--------

B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전 상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높은 금액에 상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전환우선주식B 1주당 발행가격과 이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 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지급일까지 연복리 18%의 비율로 산정된 이자의 합계액에서 상환전환우선주식B 1주에 대해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2. 상환전환우선주식B 1주당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 투자자와 발행회사는 4대 회계법인 중 1개 회계법인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며,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1주당 공정가치로 함
4.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존속기간  
 상환전환우선주식B의 존속기간은 3. 나.에서 정한 상환기간(상환기간이 본계약에 따라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의미함)으로 하며, 상환전환우선주식B가 위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에 상환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환하여야 한다.

2018년 07월 17일 설정      2018년 07월 18일 등기

**기 타 사 항**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12층 1201호(서초동, 플래티넘타워) 주식회사 매드잇을 합병

2019년 11월 04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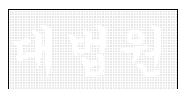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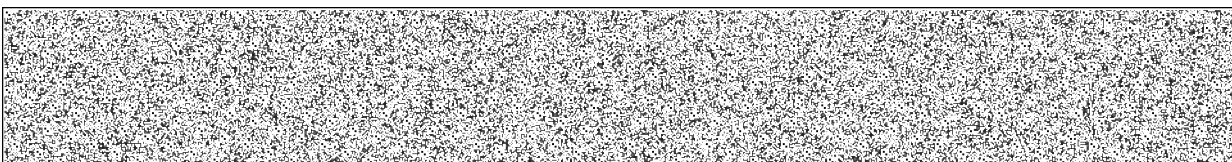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당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기번호	562815
------	--------

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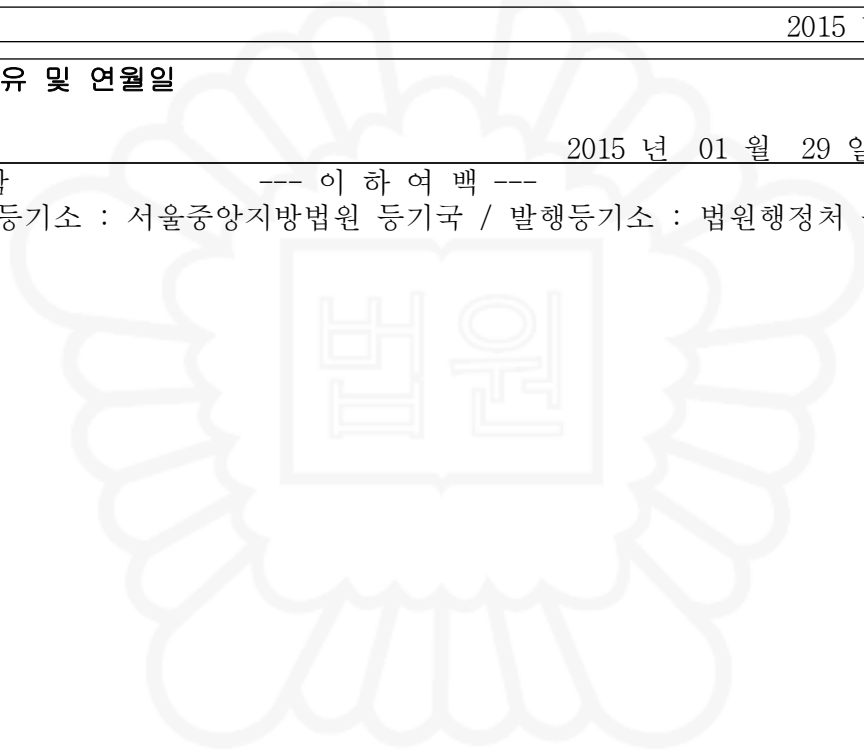
-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7년 08월 02일 설정      2017년 08월 11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5년 01월 29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5년 01월 29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0년 01월 0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8153-AATW-VCVG

1160306041111020021100022005211802167531K1D1S0L1W1 1 발행일:2020/01/02

- 11/11 -

